삼정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26, 2026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산업의 이전가격 분쟁 동향 및 주요 이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산업은 복잡한 공급망 구조,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지속가능성 및 기술 중심으로의 산업 전환 등에 따라 이전가격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과세당국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자금거래 및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이전가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확한 문서화, 정밀한 비교가능성 분석 및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이전가격 분쟁은 공통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재화거래구조에 대한 검토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거래별 세부내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행기능 대비 손익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과세당국은 비교가능 제 3 자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 과세당국은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TNMM)을 선호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재화거래구조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CUP 분석의 신뢰성, 수행기능 대비 거래총이익률의 적정성, 변동성 높은 수익 대비 일관된 용역수수료 산정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결산 종료 이후 반영된 잔여이익분할방법(Residual Profit Split Method, RPSM) 조정의 세무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조정의 방향에 따라 정산금에 대해 과세 처분 또는 손금불산입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RPSM 을 적용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정확한 정산금 회계처리 및 공시, 계약서 명문화, 그리고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호주

호주는 소송 분쟁의 증가와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제도의 적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이전가격 분쟁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Alcoa 및 PepsiCo 등의 사례를 통해 호주 과세당국이 장기계약 가격결정, 허브(hub) 거래구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지급의 실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과세당국은 계약상 형식과 실질적 이행 방식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거래구조, 내재된 지식재산권 및 용역/재화 혼합거래구조를 보유한 에너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문서화, 면밀한 계약서 작성 및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심층적 기능·위험 분석,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자발적 이전가격 조정 요구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중국 과세당국은 에너지 기업 제품의 거래가격 외에도 장부상 거래, 로열티, 용역수수료 및 자금거래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거래 지급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히 벤치마크를 통한 TNMM 을 적용하던 관행과 달리, 최근 중국 과세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기능 분석과 함께 가치사슬 관점에서 납세자와 논의하며, 다국적기업이 중국 내에 어느 수준의 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치사슬을 고려한 이익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수익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치사슬에 근거한 이익 배분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내 법인이 마케팅 및 사업전략 등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핵심활동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중국 내 높은 수준의 이익 귀속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사례가 여전히 통상적인 사례이나, 납세자들이 자가평가와 자진신고 및 조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비공식적인 문의와 이의제기가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해졌으며, 이를 통해 중국 과세당국은 잠재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세무조사 절차를 우회하고 세수 징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제도는 점차 성숙해지면서 납세자들이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자산, 장부상 거래, 용역 및 자금거래 등이 수반되는 복잡한 에너지 산업의 거래에서 더 유용합니다. 간소화된 일방 APA 제도가 도입되고 조세 확실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내 APA 제도는 장기적인 이전가격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개별 세무조사의 심도와 집중도는 오히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본 과세당국은 개별연도 분석, 국내 비교대상회사 활용 및 개별거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CUP 분석은 지표가격 또는 넓은 시장가격 범위가 사용되는 경우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용역 및 인력 관련 비용 청구 내역과 더불어 탐사권, 노하우 및 마케팅 자산 등의 무형자산거래가 지속적으로 엄격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는 이전가격 분쟁이 매우 활발한 시장으로서 혼합금융상품, 유사지분 또는 무이자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융 및 자금거래에 대한 분쟁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전가격 규정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 양측의 관점에서 모두 검토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인도법인 외에도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인도 과세당국의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의 성격 분류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었고, 무이자 또는 자본연계형 자금조달을 정상가격 이자를 수반해야 하는 부채로 재구성하려는 과세당국의 시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대규모 통합 그룹 내 특정 국내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개발의 핵심 요소인 그룹 내 자금거래, 장비 공급거래 및 EPC 거래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에너지 기업과 관련된 ITA No. 4828/Mum/2024 판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이전가격 과세가 단순히 이익률 검토 외에도 상업적 실질과 산업 특유의 규제 제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PA 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APA 제도를 통해 복잡한 금융거래 및 산업 이슈를 약 1 년 내에 해결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5~10 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인도의 변화하는 이전가격 환경에서 조기에 조세 확실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APA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 이전가격 분쟁은 점차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동일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연도 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빈번하게 변경하고, 수용가능한 이전가격의 구성요소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CUP 분석

시 할증료, 추가요금 및 물류 수수료를 제외하거나,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 가격과 같은 비교가능성 분석의 적용을 부인하는 사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산출방식에 완전성 및 내부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례에서 기업들이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단계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여전히 상당한 조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거래 상세자료 확보, 정밀한 비교가능성 분석 및 적시적인 이전가격 문서화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2023 년 이전가격 규정은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이행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엄격한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짧은 자료 제출 기한 및 벌금 또는 징역형에 이르는 페널티 규정 등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이전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로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정상가격 사분위범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의 정상가격 범위(37.5 번째 및 62.5 번째 백분위 사이)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은 혼합금융상품 및 캐시 풀링 관련 가이드라인 발행 등 지속적인 이전가격 제도 발전을 통해 에너지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은 여전히 강도 높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정보수집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체적으로 비교가능기업 또는 비교대상 거래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재무정보도 빈번하게 요청합니다.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가 수반되는 상품거래는 특히 중점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례에서 비교가능성의 한계를 이유로 CUP 방식이 배척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TNMM 이 세무조사와 APA 신청 모두에서 점차 선호되는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기업은 포괄적인 기능 분석,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그리고 방법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대한 제출도 자주 요구하므로, 이전가격 분석은 실제 사업 수행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결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산업의 이전가격 분쟁은 점차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며, 데이터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과세당국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분석력으로 기존 가격산정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기업들은 선제적 이전가격 관리 개선, 현행 이전가격 정책 재검토, APA 및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제도 활용을 통해 조세 확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U: 이전가격 조정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Stellantis Portugal, S.A. 사건(Case C-603/24)에서, 재판매법인이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연말 이전가격 조정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llantis Portugal 은 그룹 내 재판매법인으로서 제조법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제 3 자 딜러에 판매하였고, 판매차량에 제조상 결함이나 긴급출동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 딜러가 수리를 수행한 후 이를 Stellantis Portugal 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매법인은 이러한 수리비를 인건비·전기료·마케팅비 등과 함께 전체 유통비용의 일부로 처리하여 제조법인에 보고하였습니다.

2004 년에 체결된 그룹 내 이전가격 계약에 따라 제조법인은 재판매법인이 사전에 합의된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량·부품 등의 이전가격을 설정하였고, 연말에는 차감 또는 가산 정산전표 기입을 통해 이전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포르투갈 과세당국은 재판매법인이 딜러 수리비를 우선 지급한 후 연말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이를 제조법인에 사실상 전가하였다고 보아, 재판매법인이 제조법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이자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 상 과세 대상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판시하였습니다.

-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용역 존재
- 해당 용역과 지급금액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 필요
- 당사자 간 상호 의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 존재

본 사건의 이전가격 계약은 재판매법인이 차량 재판매 과정에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도록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제조법인을 위해 별도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금액은 수리비만이 아니라 인건비·전기료·마케팅비 등 광범위한 운영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었고, 판매법인이 실제 수리비 전액을 제조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는 점에서, 수리행위와 이전가격 조정 사이에는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인 연관성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또한 재판매법인이 제조법인을 대신하여 딜러 수리거래에 관여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전가격 조정이 용역 대가는 아니더라도 최초 차량 판매가격에 대한 사후 가격조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래 차량 판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KPMG 는 이번 판결이 연말 TP 조정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유사한 판례인 Arcomet Towercranes 사건에서는 그룹

내 서비스 내용과 보수가 계약상 명확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인정된 반면, 이번 Stellantis 사건에서는 그러한 직접적 연결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열사 간 계약 및 TP 정책 수립시 아래와 같은 요소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 지급의 성격이 이전가격 조정인지 용역보수인지 명확히 구분
- 이전가격 정책과 부가가치세 처리의 정합성 유지
-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문서상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리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국제세원-1710 (2025.09.26)

제목: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 시, 해당 손자회사의 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발생 여부

1) 사실관계

- 한국 거주자인 질의인은 외국(OO국) 소재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해당 해외자회사는 동일 국가 내 다른 법인(해외손자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 한국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회신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됨. 이는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료 제출 범위에 부합하므로, 해당 거주자는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4)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03 관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HS Code) 심의를 위해 올해 두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란?** 수입 물품의 세율 및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최종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1982 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2) 주요 결정 내용

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확대되는 가전 시장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결정 세번

<table>
<tr><th colspan="2">품목</th><th>결정 세번</th><th colspan="2">경합 세번</th></tr>
<tr><td rowspan="2">무선충전
무드등
시계</td><td>
</td><td>배터리 충전기
(제 8504.40-3010 호,
WTO 양허 0%)</td><td>시계
(제 9105.11-0000 호,
기본 8%)</td><td>전기식의 조명
(제 9405.21-0000 호, 기본 8%)</td></tr>
<tr><td>결정 사유</td><td colspan="3">해당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치)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td></tr>
</table>

차량에 장착된 스피커 그릴(덮개)	 < 쟁점물품 >	 < 장착 위치 >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708.29-0000 호, 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25%)	스피커의 부분품 (제 8518.90-9000 호, 인도기본 1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제 7326.90-9000 호, 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50%),
	결정 사유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에 대해서는 스피커 부분품이 아닌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3) KPMG 의견

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과 신기술 가전 부품에 대한 관세청의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술 융·복합으로 인해 하나의 물품에 여러 기능이 혼재되면서 어떤 세번(HS Code)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세부담이 달라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품목분류 분쟁과 사후 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업체는 당사 수입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최신 변경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품목분류 결정 및 거래구조 적용 시 법령상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복합 가전이나 전용 부분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번 경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 취임

1) 개요

지난 5 월 18 일, 제 35 대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작년 7 월에 임명된 이후 약 10 개월 만의 교체인사로, 금번 정부의 인사발표 브리핑 시 이종욱 신임 청장에 대해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행위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종욱 청장은 직전 관세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관세청 내부 승진으로 연속 임명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프로필**

▲ 경북 상주 ▲ 김천고 ▲ 연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43 회 ▲ 미국 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 본청 통관기획과장 ▲ 본청 심사국장 ▲ 본청 통관국장 ▲ 본청 조사국장 ▲ 본청 차장

2) 취임사 및 주요 관세행정 운영 방향

이종욱 관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통상환경 변화 및 초국가범죄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향후 관세행정의 핵심 추진 방향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국경 감시체계 재설계
- 반도체·전자상거래 등 첨단산업 및 수출입기업 지원 확대
- 무역·외환거래 기반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단속 강화
-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 신종 관세탈루 대응체계 구축
- AI·디지털 기반 관세행정 혁신 추진
- 중동사태 대응 및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

3) KPMG 의견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정통 관세맨'으로서, 통관·조사·기획·인사 분야를 두루 거쳐 실무 경험이 매우 폭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브리핑 시 소개내용과, 취임사에 비추어 금번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의 기조와 발맞춘 마약과 총기 밀반입 차단임이 명확합니다.

또한 이종욱 신임 청장의 취임사는 관세청이 공급망 안정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조사·단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외환거래, 전자상거래, 가상자산 거래, 우회거래 및 저가신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외환 및 자금 흐름 관리, 수출입가격 산정 근거, 원산지 및 FTA 적용 적정성, 해외직구·전자상거래 거래 프로세스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KPMG는 풍부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Contact Poin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